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4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강명구 · 서천호 · 엄태영

김정재 · 이성권 · 임종득

구자근 · 이종배 · 임이자

박준태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영유아의 낙상 등 외상 발생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택의 신생아 낙상사고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바,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함.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도록 하여 정부가 신생아 낙상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2호라목 신설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염이나 질병을”을 “감염, 질병 및 낙상 등 안전사고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화재 · 누전”을 “화재 · 누전이나 낙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송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을”을 “이송 사실,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 및 제4호의2에 따라 통보받은 건강 상태를”로 한다.

라.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

마. 그 밖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 · 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4의2. 제3항에 따라 화재 · 누전이나 낙상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임산부나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통보받아 확인할 것

제15조의8제3호 중 “제3호까지의”를 “제3호까지 및 제4호의2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 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생 략)</p> <p>2. <u>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u>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p> <p>가. ~ 다.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u>화재·누전</u> 등 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p>	<p>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 사항) -----</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감염, 질병 및 낙상 등 안전 사고를</u>-----</p> <p>-----</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u></p> <p>마. <u>그 밖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u></p> <p>3. -----</p> <p>-----</p> <p>-----<u>화재·누전이나 낙상</u>-----</p>

<p>3. 제15조의4제1호부터 <u>제3호까</u> <u>지의</u>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4. ~ 7. (생 략)</p>	<p>3. ----- <u>제3호까</u> <u>지 및 제4호의2의</u>----- ----- -----</p> <p>4. ~ 7. (현행과 같음)</p>
--	---